201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(행 정 국 소 관)

행정문화위원회
전문위원 한철우

- 보고순서 -

1.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요

2.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3. 검토의견

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1.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요

□ 2012. 11. 2. “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조례”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, 동 조례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“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”가 폐지되고,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“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”이“남북교류협력기금”으로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□“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”으로부터 승계되는 4억 3,286만원을 “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조례”제4조에 의거 신설되는“남북교류 협력기금”의 2012년 기금 조성 수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□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”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“남북협력기금”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·의결을 받고자 함.

[표-1] 기금 운영 변경계획안 개요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1년도말 조 성 액	2012년도 운용계획			2012년도말 조 성 액
		수 입	지 출	증 감	
변 경		432,860	432,860		432,860
당 초					
증△감		432,860	432,860		432,860

2.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□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4억 3,286만원임.

○ 임시적 세외수입인 전입금은 4억 3,286만원임

□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재무활동 4억 3,286만원임.

○ 재무활동인 예탁금 4억 1,000만원과 예치금 2,286만원임

[표-2]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지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	기정	변경	증감	비고
수입	**계**			**432,860**	**432,860**	
	임시적 세외수입			432,860	432,860	
		전입금(기금)		432,860	432,860	
지출	**계**			**432,860**	**432,860**	
	재무활동			432,860	432,860	
		예탁금		410,000	410,000	
		예치금		22,860	22,860	

3. 검토의견

□ 남북교류협력기금은 “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조례”에 의거“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”가 폐지되고,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“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”이“남북교류협력기금”으로 승계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기금이나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,

□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”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.